

의안번호	2207221
의 퇴 인	김동아 의원
회 답 일	2025. 3. 5.
추계번호	25A0014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1인 중증장애인기업에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2,106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 6,120억원(연평균 3,224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(안 제10조의3)	2,106	2,558	3,106	3,771	4,579	16,120	3,22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.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(제1항)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과 관련하여 현재 시범사업이 운영 중인데, 개정안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“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”는 개정안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법 제10조의3제1항¹⁾에 따라 “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”를 시범사업 형태로 수행하고 있음(2024년 실적 2억원)
 - 개정안은 동 사업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(제2항 신설)
-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인 1인 중증장애인기업 수는 「장애인기업실태조사」에 근거하여 추정함
 - 2년 주기로 수행되는 「장애인기업실태조사」(국가승인통계번호 제142014호)에 따르면, 1인 중증장애인기업 수는 2018년 4,494개, 2020년 6,051개, 2022년 9,142개로,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19.4% 증가하고 있음
 - 추계기간 동안 동 증가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1인당 단가는 유사사업인 고용노동부의 “근로지원인 지원” 사업을 준용하여 추정함

1)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10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지원인”이라 한다)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- 고용노동부의 동 사업은 “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”하는 것으로, 2025년 예산은 2,469억 9,100만원임
 - 동 사업의 근로지원인 1인당 단가(2025년 예산)는 연 21.9백만원으로 2024년 대비 1.7% 증가한 수준임
 - 추계기간 동안 동 증가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- 개정안의 지원 대상인 1인 중증장애기업이 모두 동 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원율을 50%로 가정할 경우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2,106억원 등 5년 동안 총 1조 6,120억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1인 중증장애기업 수 (A, 만개)	1.9	2.2	2.7	3.2	3.8	—
지원대상 기업 수 (B=A×50%, 만개)	0.9	1.1	1.3	1.6	1.9	—
업무지원인 서비스 1인당 단가 (C, 백만원/연)	22.7	23.0	23.4	23.8	24.2	—
추가재정소요(B×C, 억원)	2,106	2,558	3,106	3,771	4,579	16,1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